

## 1번 질문 : 임기 제한

### 답변 제출자 명단—찬성 입장

Matthew Goldstein, CRC 의장

John H. Banks, CRC 부의장

Jose A. Padilla, Jr.

Michael Romano

Sebastian Ulanga Santiago

Theresa Scavo, 2009년도 시 의회 후보

Henry J. Stern, 뉴욕 시민사회단체 회장, 전임 공원·레크리에이션 국 국장

### 답변 제출자 명단—반대 입장

Ruth E. Acker, 뉴욕시 여성클럽 회장

James Brennan, 뉴욕주 하원의원 (브루클린)

Gale A. Brewer, 6 선거구 시 의회 의원

Tyrrell L. Eiland, New Voice Political Action 위원회 의장, 2009년도 시장선거 출마후보

Pete Gleason

Dan Jacoby, GrassrootsNYC 이사

Oliver Koppel, 11 선거구 시 의회 의원

뉴욕시 여성유권자 연맹

Carl E. Person, 2010년도 뉴욕시 검찰총장 선거 자유주의당 후보

Peter F. Vallone, 전임 시 의회 의장

Howard Charles Yourow, S.J.D.

---

## 1번 문항 : 공개 입장표명 코멘트—찬성 입장

### Matthew Goldstein , CRC 의장

2010년도 뉴욕시 현장개정위원회는 시 현장에 대한 공개적이며 비당파적인 검토 과정 끝에 정부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두 가지 포괄적인 개정안을 제시했다.

뉴욕주민들은 정부가 주민들의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2회 임기 한도 제한법에 대해 다시 한 번 표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첫 번째 질문은 2010년 선거나 그 이후에 선출된 공무원들에게 2회 임기 한도를 적용하고 시 의회가 현직 선출직 공무원들의 임기 한도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될 이 법안은 현재 공무원들에게 미칠 영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1993년 임기 한도 주민투표 결과의 정신과도 일치한다.

2번 질문은 통해 유권자들은 선거 자금 지출내용의 완전 공개, 공천기회의 확대, 이해 상충 규정의 강화 등 중요한 측면에서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 청렴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치는 유권자들이 정부가 책임감 있고 공개적으로 운영된다고 믿고 있을 때만 정부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 현장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져서 주민들의 의사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민주적이고도 효율적인 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 **John H. Banks, CRC 부의장**

이 두 질문을 통해 뉴욕시 유권자들은 시 정부 구조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1번 질문은 임기 한도 문제에 대해 표결할 기회를 뉴욕시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 번 준다.

2번 질문은 뉴욕시 정부의 구조와 운영방식 및 뉴욕시에서 선거를 치르는 절차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는데 유권자들의 의사를 묻는다.

본인은 이들 주민투표 질문이 지향하는 목적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뉴욕시 유권자들에게 이 두 질문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호소한다.

### **Jose A. Padilla, Jr.**

민주주의란 국민들이 궁극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체제를 가리킨다. 즉 다수결에 따른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 의회 다수 의원들은 2009년 주민들의 뜻에 반해 사상 유례없는 폭거를 저지르고 자신들이 3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하여 민주주의 원칙과 유권자들의 의사를 짓밟았다. 이미 두 차례 유권자들이 뉴욕시 선출직 공무원들의 임기한도를 2회로 제한하는 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음에도 말이다. 따라서 이번 뉴욕시 현장 수정안은 2010년 11월 2일 총선이나 그 이후에 선출된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주민투표에서 결정된 사항을 되살린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법률상의 허점을 개정함으로써 다시는 시 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을 위해 법을 개정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정부기구나 정부 산하단체, 또 이에 속한 개인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법이나 제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 Michael Romano

임기를 2회로 제한하는 법안이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2010년 총선이나 그 이후에 선출된 공직자들에게 세 번째 임기란 있을 수 없다. 임기 2회 제한 규정은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뉴욕시 주민들은 임기를 2회로 제한하는 법안을 이미 두 차례나 투표로 통과시켰다. 주민들은 새로운 인재들이 자신들을 위해 공직에 선출되는 것을 도와줄 임기 2회 제한법을 고수할 권리를 갖고 있다. 어떠한 선출직 공무원이든 세 번째 임기가 되면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 시 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임기 제한을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킨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는 이해상충의 대표적 사례라고 봐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들의 의사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 Sebastian Ulanga Santiago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임기제한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뉴욕시 유권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인은 믿는다. 시 현장이 개정되기 전 2009년 선거에서 주민투표가 시행됐어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아니라 뉴욕시 유권자들이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 시 선출직 공직자들의 임기를 언제 선출됐는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2회로 제한해야 한다.
- 뉴욕시 유권자들은 임기제한을 연장하는 모든 조항에 반대했으며 본인 또한 현행 임기(2회) 제한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 시 현장에 추가되어야 할 조항은 시 선출직 공직자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의 의사를 묻기 전에는 현장 문구를 한 구절이라도 수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 Theresa Scavo, 2009년도 시 의회 후보

뉴욕시 유권자들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임기를 2회로 제한하고자 한다는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것도 두 차례나 말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의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시장과 시 의회는 유권자들의 뜻에 반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을 뿐이다. 임기 2회 제한규정은 공익대변인, 감사관뿐만 아니라 현직 시 의회 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공직자들에게 평생에 걸친 일자리를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며 이런 상황에서 현직자를 퇴임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을 수밖에 없다. 모든 공직자의 임기를 2회로 제한할 수 있도록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 Henry J. Stern, 뉴욕 시민사회단체 회장, 전임 공원·레크리에이션 국 국장

1번 질문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여러분께 호소한다. 현장개정위원회가 2회 임기한도법 발효일자를 2021년까지 연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치 못하겠지만 그래도 1번 주민투표안은 현행 시스템보다 훨씬 나은 대안을 제공한다. 1990년대에 뉴욕시 주민들은 임기를 2회로 제한하는 안을 두 차례나 주민투표로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시장과 시 의회는 법률상의 허점을 이용해 주민투표 결과를 뒤집어엮고 자신들의 임기를 세 차례까지 연장하려 들고 있다. 시장은 올해 새로운 시 현장 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들은 2010년 총선에 2회 임기제한 안을 올렸다. 그러나 내부 인사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려는 목적으로 이들은 개혁 발효일자를 2021년으로 미뤘지만 말이다. 정치에서 그건 거의 평생이나 다름없다.

임기한도법의 반대론자들은 유권자들이 이런 음모에 대해 염증을 느껴 법안을 부결시킬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유권자들이 임기한도법에 반대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이 현직에서 평생 유임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1번 문항은 시 의회 의원들이 2008년에 뻔뻔하게 그랬듯이 임기한도를 갖고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평생 공직에 머무르며 임기한도법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1번 문항에 찬성표를 던지고 2011년에 우리가 벌일 Term Limits Now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다.

---

## 1번 문항 : 공개 입장표명 코멘트—반대 입장

### Ruth E. Acker, 뉴욕시 여성클럽 회장

뉴욕시 여성클럽(WCC)은 임기제한법이 뉴욕시 정부 운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임기제한 규정은 정부 공직자들이 장기적 계획보다는 단기적 실적에만 급급하게 만든다. 공무원이 임기 기간동안 자신이 계획했던 정책을 실행할 수 없을 경우 장기적 계획을 세울 인센티브가 없어지게 된다. 더구나 선출직 공무원들은 임기가 끝난 후 다른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실행에 옮긴 정책의 장기적인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임기제한법은 책임자들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 속에서 보좌관과 로비스트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만을 낳을 뿐이다.

WCC는 시 현장개정위원회가 주민투표에 “공직자 임기제한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넣기를 기대했었다. 이 질문에 우리 단체는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민투표 질문은 선출직 공무원의 연임 한도를 3회에서 2회로 줄이는 여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번 질문 전체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로 했다.

## James Brennan, 뉴욕주 하원의원 (브루클린)

지난 1월 여러 정부운영개혁단체는 뉴욕시장이 헌장개정위원회를 조직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어떠한 위원회이든 “중요한 과업을 맡아서 실행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본인 또한 시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헌장개정위원회가 과연 시 정부를 세심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었다.

스콧 스트린저 맨하탄 보로장은 이 문제를 2011년도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시 헌장개정위원회에 요청했었다. 또 뉴욕타임스 지도 이 문제를 주민투표에 상정하는 것을 2012년 선거까지 연기할 것을 종용했었다.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토론하며 참여하기를 바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번 질문은 블룸버그 시장과 사업가 로널드 로더 간의 타협을 실현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됐다. 즉 로더가 블룸버그 시장의 3기 재선 운동을 후원하는 대가로 헌장위원회를 통해 임기제한법을 재검토한다는 것이었다.

2번 질문은 실제로 일곱 가지 개별 문항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들을 한꺼번에 찬성 또는 반대표를 던지게 되어 있어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박탈하는 셈이 된다. 이 문항들 가운데 하나는 시 쓰레기 수거 문제 및 다른 사안들을 청취하는 판사들을 단일 기구 내에 배치함으로써 이들의 독립성을 잃게 하고 직업 안정성까지 빼앗아서 주민들을 위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 Gale A. Brewer, 6 선거구 시 의회 의원

본인은 시 의회 의원으로서 유권자들이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신념 아래에 3회 임기 한도 제한법에 반대표를 던졌었다. 헌장개정위원회이 내놓은 주민투표안은 의도는 좋으나 실수를 범하고 있다. 모든 뉴욕시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3회 연임해야 한다고 본인은 믿는다. 뉴욕시 시정의 복잡성과 규모를 고려하면 공무원들의 능력 발휘를 위해 장기간에 걸친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Tyrrell L. Eiland, New Voice Political Action 위원회 회장, 2009년도 시장선거 출마후보

선출직 공직자들은 시 의회에서 이미 개정한대로 3회까지 연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법을 지금 와서 뒤집으면 2009년에 재선된 공직자들을 불공평하게 우대하는 셈이 된다. 이는 또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정부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저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공직자 중 일부만 입법 개정에서 이득을 보고 다른 공직자들에게는 또 다른 개정 법률을 준수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시는 시 의회가 이런 식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모든 선거법 개정은

주민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정부 운영상의 투명성과 형평성은 뉴욕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다.

## **Pete Gleason**

임기제한법에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법률을 지키는 의미를 갖는다.

미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입법기구가 합법적으로 유권자들의 주민투표 결과를 번복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제2순회항소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친 주민투표 결과에 반하여 시 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에 반대하는 운동가들의 비판에 일체 영향 받지 않았다.

*우리는 이런 주장에 개의치 않는다. 한마디로 원고 측은 뉴욕시가 주민투표로 통과된 법과 입법기구에서 통과된 법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 입장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를 위반하지 않는다. 원고 측이 헌법 수정 제1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데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있더라도 이는 스스로 부과한 것이므로 부수적이고 헌법적으로도 사소한 사안에 지나지 않는다.*

제2순회항소법원이 인용한 관련 주 법원 판례는 법원이 입법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다 명백하게 하고 있다. 즉 이는 한 정부 기관이 다른 기관의 활동에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원리이다.

심지어 뉴욕시 이해상충위원회도 시 의회가 두 차례의 주민투표 결과를 합당한 입법절차를 통해 번복한 것은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이들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된 의원들에 의해 뒤집어지는 상황에서 아무리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도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 **Dan Jacoby, GrassrootsNYC 이사**

임기제한법이 현장개정위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이다. 블룸버그 시장은 임기 한도를 3회로 연장하여 자신이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한 다음 대부호 로널드 로더와 담합하여 그를 현장개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었다. 로더는 나중에 위원장직을 사양했지만 말이다.

1. 임기한도를 2회로 제한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임기제한을 얼마나 원하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임기제한법은 해당 문제에 대한 잘못된 해결책이다. 이 법은 의도한 결과를 내지 못할 것일 뿐만 아니라 기존 공직자들의

지나친 권력 보유라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GrassrootsNYC**는 이 사안에 반대한다.

2. 모든 현직 공직자들에게 기존의 법을 적용해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이다. 임기한도를 가장 처음 설정했던 1993년 주민투표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있었다. **GrassrootsNYC**는 이 사안에 찬성한다.
3. 시 의회에서 임기제한법을 다시 개정하지 못하도록 한다: 시 의회는 임기제한법을 개정하는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GrassrootsNYC**는 이 사안에 찬성한다.

우리는 시 의회의 임기제한법 개정 권한을 박탈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이 세 가지 이슈가 별도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모두가 하나의 문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GrassrootsNYC**는 이 문항에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

### Oliver Koppell, 11 선거구 시 의회 의원

선출직 공직자들이 연임할 수 있는 한도를 3회에서 2회로 줄인다는 주민투표 1번 질문에 본인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본인은 오랫동안 임기제한법에 반대해왔다. 그 이유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후보가 몇 차례 연임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계속 공직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유권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 믿었고, 따라서 임기제한법이 비민주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임기 한도가 입법화된 경우를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축적된 경험이 무의미하게 됐고 선출직 정치인들이 퇴임 후 정치권에서나 바깥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 여념이 없게 돼 민생에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더구나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는 의원들은 많은 경우 다선 의원들이다.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고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다. 그는 거의 50년에 걸쳐 상원의원직을 연임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고로 유능한 상원의원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임기 한도를 아예 폐지하는 주민투표 문항이 올라왔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나마 연임 한도를 3회까지 연장하는 현행법이 그런 문제점을 덜어 주는데 도움이 됐다고 본다. 이를 다시 2회로 줄인다는 것은 크나큰 실수가 아닐 수 없다.

### 뉴욕시 여성유권자 연맹

뉴욕시 여성유권자연맹은 임기제한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도록 유권자들에게 종용하고 있다. 우리는 주민투표 문항을 만들 때 먼저 임기 한도를 늘릴지 또는 줄일지 묻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선택사항으로 임기 한도 회수를 묻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현장개정위원회에 요구했었다. 우리 연맹은 임기제한법에 줄곧 반대해왔다. 정치인의 임기를 제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직 정치인이 주민들의 민생을 도외시키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 무관심해하면 차기 선거에서 탈락시키는 것이다. 임기제한이 좀 더 책임 있는 행정부 또는 입법부 공직자를 만들어낸 사례를 우리는 본 적이 없다. 많은 경우 마지막 임기를 맞는 선출직 공무원은 차기 선거 당선이나 정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자기 개인의 업적을 돋보이게 하는 데만 급급해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상호협력이나 합의 분위기 조성에 좋을 수 없다. 장기간 같은 직에 근무하면 정치인들은 공공정책 분야에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고 이로써 유권자들에 혜택을 가져다줄뿐더러 비선출직 보좌관들에게 의존해야 할 필요도 없게 된다.

기존 공직자들이 선거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뉴욕시 선거재정프로그램은 신인 후보들이 출마하여 당선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당히 많은 제도를 도입했다.

### **Carl E. Person, 2010년도 뉴욕시 검찰총장 선거 자유주의당 후보**

뉴욕시 유권자들은 시 현장의 2회 연임 제한법안을 (1993년에) 이미 통과시켰고 이후 (1996년에) 시 행정부가 2회 이상 연임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내놓은 현장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주민투표안은 2회 임기제한법 발효를 2021년으로 연기해 유권자들이 처음으로 2회 제한 현장 개정을 통과시킨 후 28년이 지난 후에야 이를 유효하게 만든다. 현직 공직자가 신인 후보를 선거에서 이기거나 아예 출마를 포기하게 만드는 경쟁 우위를 없애는데 2회 임기제한법은 뉴욕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또한 2회 임기제한법은 다선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을 압도하는 수단을 제거하고 그럼으로써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후보를 뽑을 기회를 주는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법원에서 1993년 2회 임기제한법이 현행 발효법이라고 판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 시장의 3기 재선을 막기 위해서는 이 주민투표안에 반대해야 한다. 현 제안은 법안 발효일자를 2021년으로 연기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현장을 수정해 임기제한을 완전히 없앨 수도 있다. 이번 주민투표안에 포함되어야 할 조항은 시 의회가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해 확정된 현장 조항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조항이다.

### **Peter F. Vallone, 전임 시 의회 의장**

임기 제한에 대한 1번 질문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본인은 1986년에서 2001년까지 시 의회 의장에 재직한 바 있고 따라서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는 시장과 같은 고위 직책의 임기제한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한편 시 의회에서의 임기제한은 안정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필요한 힘의 균형을 깨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이런 힘의 균형은 1989년 시 현장 개정을 한 다음부터 계속 유지되어 왔었다.

지난 1970년대 말부터 카치, 딘킨스, 줄리아니, 블룸버그 시장 아래서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되어온 우리 시 의회를 미국 전역에서도 최악의 주의회로 꼽히는 뉴욕 주의회와



혼동해선 안 된다. 뉴욕시 의회는 상호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여러 획기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예를 들어 안전한 이웃/안전한 거리(**Safe Streets/Safe City**) 법안은 우리 시를 미 전국에서도 가장 안전한 도시의 하나로 꼽히게 하였고 역사적인 선거자금법 또한 뉴욕시민 누구든지 공직에 출마할 동등한 기회를 부여했다. 한편, 미국 최초의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을 통과시켜 흡연을 제한했고 노숙자들이 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으며, 매년 예산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했다.

시 의회 의원들의 임기를 제한하는 최선의 방법은 나쁜 의원들을 낙선시키고 유능한 의원들만 남기는 것입니다!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 **Howard Charles Yourow, S.J.D.**

현직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는 기존의 법을 적용해 임기 한도를 ‘점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 현 주민투표안의 치명적인 문제이다. 이것은 원래 의도한 개혁이 지금부터 10년 후에나 발효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두 차례의 주민투표를 거쳐 모든 선출직 공무원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라는 의사를 유권자들이 표명했음에도 이런 법안이 지금 나온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아쉽게도 연임 한도를 3회에서 2회로 다시 줄이는 규정을 이번 선거나 그 이후에 당선되는 공직자들에게만 적용한다는 안을 내놓음으로써 현장개정위원회는 중요한 개혁의 발효일자를 과도하게 늦추고 원래 개혁의 본 의도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또 이 때문에 임기한도를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시 의회에서 현직 공무원들의 임기 한도를 변경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결정의 취지 또한 무의미하게 되어버렸다. 따라서 주민들은 현 제안을 거부하여 현장개정위원회가 다른 면에서는 뛰어난 이 개혁안을 재고하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머나먼 장래가 아니라 차기 시 선거에서 발효될 임기 2회 제한법안을 내놓게 해야 한다. 현직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차단해야 함은 물론이다.